

12·17 국제회의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해외의 활동가들에게서 듣는다 -



- 일시 : 2002년 12월 17일 (화) 오후 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T. 02-719-9085 / F. 02-718-9085 / corights@jinbo.net)

< 일정 >

사회 :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00 - 2:10 : 인사말

2:10 - 2:50 :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최근 노력과 도전 / 안드레아스 스펙

2:50 - 3:30 : 반전인터내셔널, 미국친우봉사회 활동 소개 / 안드레아스 스펙, 제임스 라일리

3:30 - 3:40 : 휴식

3:40 - 4:10 : 한국의 병역거부 현황 / 유호근(병역거부자),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4:10 - 5:00 : 질의 응답 및 토론

< 참여단체 소개 >

■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 www.wri-irg.org)

“전쟁은 인간성(humanity)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반전인터내셔널’의 정신이 집약된 창립 선언문이다. 반전인터내셔널은 1차 세계대전 중 활동한 반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21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뒤이어 1923년 미국 지부가 설립된 이래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현재는 40여 개국 80여 개 지부가 활동중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반전인터내셔널 활동의 중심 축이다. 창립자인 허버트 런햄 브라운부터 1차 세계대전 중 병역거부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병역거부자였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주로 비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로 구성돼 있다. 서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대체복무가 도입된 데는 한 세기에 걸친 이들의 활동이 큰 몫을 담당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전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군사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 쓰이는 세금내기를 거부하는 운동, 제3세계의 병역거부자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베트남 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징집카드 불태우기 운동도 이들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반전인터내셔널의 평화운동은 병역거부 운동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나치 치하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활동은 대표적인 예다.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나치 치하의 네덜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비폭력 저항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44년 반전인터내셔널 네덜란드 지부 사무총장은 불법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나치에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폭

력 직접행동'은 이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 www.afsc.org)

사회사업과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1917년 미국과 캐나다의 프렌드파(퀘이커교도)가 창설한 단체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도와 선택적 군복무 형태의 일환으로 구제사업과 구급차 부대에서 일하도록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정신병원을 비롯한 인도적인 부문에서 일하는 것도 선택적 군복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다. 평화시에는 지역사회 발전, 미국 내 인종화합, 계절노동자 원조, 전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구호, 피난민 지원사업과 같은 국내외 사업계획들을 추진했다. AFSC의 자발적 국제 봉사 임무(VISA) 계획은 미국평화봉사단의 본보기가 되었다. 1947년 영국의 퀘이커 봉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AFSC는 개인이나 재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단체의 사업이 시행되는 나라의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한다.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다.

< 참여자 소개 >

□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Apeck)

반전인터내셔널 사무총장

□ 제임스 라일리(James Reilly)

미국친우봉사회 동아시아 담당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의 노력과 도전들

안드레아스 스피크 (War Resisters' International, 반전 인터내셔널)

친해하는 여러분

우선 제가 이 곳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과 정민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의 노력과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황,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배경을 포함한 간략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런던에 있는 반전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하는 전면적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군대의 인원을 보충하는 수단인 징병제를 반대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의 결과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반대합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복부는 국방의 민간 부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병역거부자들이 병원의 일을 돕거나 식품 쿠폰을 분배하거나 난민들을 돕거나 불을 끄거나 광산을 청소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적인 결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군대의 존재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원칙적 거부입니다. 병역거부는 인권 문제 이상의 무엇이며 반전평화주의자들과 반(反)군국주의자들의 원칙적인 행동입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1921년 유럽에서의 제 1차 세계대전에 대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의 창립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일 뿐 아니라 전쟁과 전쟁준비에 반대하는 중요한 공공의 성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을 사뭇 다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비록 그것이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로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병역거부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상황과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직업 군인의 형태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오래 전에 징병제를 폐지한 영국과 미국을 따르는 것입니다. 좀 더 최근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은 징병제를 폐지했거나 혹은 좀더 정확히 말해 징병제를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서유럽 국가들과 대부분의 중부, 동유럽 국가들에는 여전히 징병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들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벨로루시, 알바니아,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의 국가들은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징병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단히 군사화 되어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저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아프리카의 상황은 좀더 분명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광폭한 분쟁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징병제는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인 법은 아닙니다. 몇몇 국가들은 징병제에 의지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는 직업 군인이 존재하며 어떤 국가들은 병사 모집에 있어 좀더 임의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병사 모집에 여러 방법들이 혼합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역거부는 거의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강압적인 징병에 있어 종종 병역거부자들이 즉각적으로 수감되거나 심지어는 사형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역 회피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 코카서스 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의 상황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권리의 부재, 그리고 동시에 뇌물과 의학적 면제를 통한 광범위한 병역기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내의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 소비에트 연방, 특히 러시아의 ‘병사 어머니들의 모임’의 보고서에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구로써 이러한 다양한 대응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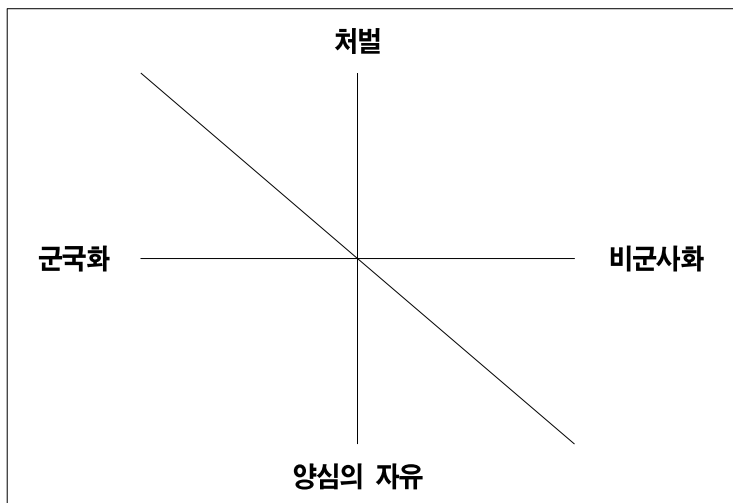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뿌리깊은 긴장¹⁾과 함께 하는 개념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한 개인의 입

1) 인권으로서의 병역거부와 반군국주의 행동으로서의 병역거부, 『Broken Rifle 55호』, Andreas Speck and Bart Horeman, 2002. 5 (<http://www.wri-irg.org/news/2002/br55en.htm#art4>)

장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과 사회적 비군사화(반군국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 사이의 긴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병역거부에 관련된 전략들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긴장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사이의 관계



(반전인터내셔널 1995²⁾)

전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맞기는 접근방식-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것이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인권으로서의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은 대체 복무와 관련된 몇몇을 위한 예외적인 권리를 창조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징병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충분한 국가에서 군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오늘날 군대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개인적이고 탈정치적인 병역거부자들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독일사회는 점점 군사국가화 되어가고 있으며 독일 군은 국외의 일에도 간섭하고 있습니다.³⁾ 독일 사회가 반군사국가화 되어 가는 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기여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전적으로 반군국주의적인 접근 방식-병역거부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개인의 동기를 무시하고 심지어 가능성 있는 동맹자를 소외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경우에서처럼 정부에게 성가신, 대량의 수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징병제와 전략들」, 『Broken Rifle 32호』, Rafa Sainz de Rozas and Hugo Valiente, 1995. 6, p.3

3) 「독일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반군국주의자의 무기인가 개인주의자의 권리인가?」, Andreas Speck. http://people.freenet.de/ask/e_co_germany.html

감자들을 생산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 할 뿐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병역거부 운동에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논쟁은 때때로 무척이나 극심했고 서로를 적으로까지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이제 지났고-저는 그렇게 바랍니다-저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여의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도전과 노력들

몇몇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국제적 병역거부 운동에 관한 최근의 노력과 도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이한 수준을 보아야 하고 그들을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 놓아야 합니다.

국제 연합의 수준에서 이것은 명백히 인권에 관한 접근 방식입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제네바에 있는 퀘이커유엔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일해 왔습니다. 2002/45 결의안은 이러한 노력의 최근의 성과입니다. 또한 반전인터내셔널과 퀘이커유엔사무국은 다른 유엔 내 기구들이 개개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반전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인 빅터 사브란스키에 대한 보고서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for Arbitrary Detention)에 제출했습니다.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EBCO)과 같은 지역적 조직과 함께 반전인터내셔널은 유럽의회, 안보회의,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지역 기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반전인터내셔널의 주요 사업은 최근 생겨난 단체와 병역거부운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반군국주의 투쟁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우리의 이해에 기반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반전인터내셔널은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비폭력 운동과 전략 개발을 위한-를 조직하고 수감되었거나 병역에 직면한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대표단을 파견하고 공동 경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4) 반전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된 수감에 대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보고하였다. 2002. 9. 20 <http://www.wri-irg.org/news/2002/newprofile.htm>

덧붙여 국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5월 15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오늘날 병역거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비폭력 직접 행동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는 발칸의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국제적 운동을 벌여내었습니다.⁵⁾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출국이 허락되지 않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도 5월 15일에 있을 국제적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⁶⁾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적인 병역거부운동을 강화할 것이며 그것의 가시성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차이점일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직업 군인의 형태로 옮겨가는 동안 많은 병역거부 운동은 이러한 변화에 그들의 전략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 라틴 아메리카,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병역거부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래의 운동들을 보전하고 이전의 경험들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운동들에 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덧붙여 구래의 병역거부 운동은 새로운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지만, 그들 사회의 반군사국가화를 위한 일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컨대 각각 다른 병역거부 운동은 매우 다른 단계와 위상들 속에 있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군국주의에 의한 위협이라는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폭력의 사회 살고 싶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번역 : 염창근 (예비 병역거부자)

5) 국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반전인터내셔널의 비폭력 활동가 30분 동안 나토를 막다.
<http://www.wri-irg.org/news/2002/press15may02.htm>

6) 2003년 5월 15일 : 국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
<http://www.wri-irg.org/news/2003/icod-03.htm> mark

미국친우봉사회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임스 라일리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라일리 (James Reilly)입니다. 저는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의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발자취로부터 배웠던 몇 가지 교훈과 함께 미국친우봉사회의 역사에 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듣고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독립적인 웨이커 조직인 미국친우봉사회는 1차 세계대전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민간인 희생자들을 도울 기회를 주기 위해 19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22개국과 미국 내 43개 지역에서 봉사, 개발, 사회정의와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친우봉사회와 영국친우봉사회가 함께 세계도처의 웨이커를 대신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병역거부의 역사는 개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전쟁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징병대상 연령의 모든 젊은이”를 소집하는 징병법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백년 뒤 시민전쟁동안, 북부의 징병법은 종교적 거부자에게 대체적인 병역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책은 서서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덜 관용적이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당시 280만 징집자중 오로지 4000명만이 군대에서 합법적인 병역거부자로서 비무장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7명의 징집거부자들은 알카트라즈(Alcatraz) 수용소에서 학대받아 숨졌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에 따르면, 프랑스 전선 근처의 유럽에서 복무했던 병역거부자는 농사를 짓거나 집을 재건축 했고 때때로 독일치하에서 포격을 하거나 공습에 참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1940년, 미국 의회는 전투를 위해 훈련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면제되도록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징병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나 주거지역에서 “시민 지휘하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불려진 비전투원의 지위로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든 복무를 거부한 이들은 수감되었습니다. 4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체복무에 동의하였습니다. ; 몇몇은 거부하여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소위 “평화 교회”라 불린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 Church), 친우회(Religious Society of Friends)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비정부 사업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캠프 운영을 맡게되었습니다.

미국역사에서 최초로 170,000명이 공식적으로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었을 때인 베트남전 동안 징병반

대는 대중적인 저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징병카드를 태우거나 망명함으로써 저항하였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도덕적 죄의식을 느껴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들에게 도덕적 지지, 법적 안내,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인 1973년 미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징병은 중단되고 있으나 등록을 거부할 시 250,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직까지 미국의 모든 18세 이상 남성 거주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등록 거부자들은 80년대 초기 이후 기소되지는 않지만, 학비대출, 대개의 주립학교 입학, 정부고용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군이 지원병제인데도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이미 입대하였던 2,500명의 남성과 여성이 양심을 이유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상담서비스, 법적 지원,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친우봉사회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복무를 거부한 결과로 차별, 합법적 징벌, 심지어는 신체적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군대내 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친우봉사회는 미국 내 활동을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신병모집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미군 지원을 고려중인 젊은이들에게 상담과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의 활동에서 미국친우봉사회의 역사와 경험은 몇 가지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결코 대중적 지지를 누리지 않았다.

미국 내 거부자들은 수많은 대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한 예가 반전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스타가 된 할리우드 배우 루 에어스(Lew Ayres)입니다. 에어스는 2차 세계대전에 전투병으로 징집되는 것을 거부해서 그의 영화에 대한 보이콧을 포함하여 할리우드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와 같은 다른 많은 공인들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으며 베트남전에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종종 그들의 신념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는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비겁하며 반애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2차 세계대전의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들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 소방수로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몇몇 거부자들은 의학적 실험에 이용되어 위험한 백신에 감염되었고, 이러한 실험으로 몇몇이 죽었고, 나머지는 복무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사망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당신들은 히틀러를 지지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항상 그들의 결정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충고와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사람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전세계에 그러한 상담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NGO들은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몇몇의 국가에서 NGO들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공정함을 확인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감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군사 정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동안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회공헌을 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환자들의 처우개선과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작업이 발전해서 마침내 국립정신건강기금(National Mental Health Foundation)이 탄생했습니다.

병역거부자로 복무한 후, 개개인들은 계속하여 사회봉사를 위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의 과거 병역거부자들의 봉사가 미국친우봉사회의 194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시에 있어서 한 나라의 도덕적 한계로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정언명령의 정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번역 :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평화를 위해 갇힌 이들의 날

- 초점: 코카서스 지방과 중앙아시아

반전인터네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방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인권투쟁 전망이 어둡다.

소련의 몰락 이래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방의 젊은 공화국들은 민주주의로 가는 힘든 장정에 있다. 이 장정은 경제 상황과 인종 분쟁으로 인해 힘들기만 하다.

문명사회가 압박 받고 있다.

“문명사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전망이 어둡다. 정치적, 사회적 대안을 주창하는 데 오는 이제 많이 층이 얇아졌다. 전체 정치적 재야 세력들이 추방당하였든지, 무의미한 것으로 단죄되었든지 혹은 타협에 굴복하였든지 하기 때문이다. 이 곳 정부들에게 유일한 위협이란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오는 무장 이슬람 투쟁뿐이다.” ‘열린 사회 연구소’ 발간인 유스틴 부르케의 말이다.

분쟁과 폭력은 많은 사람을 피난길에 나서게 했다. “지난 10년 간 끊임없는 민족, 종교, 국가, 인종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때문에 수백만 민중이 고통을 받았다. 남부 코카서스를 보라” 우샤 나누마슈빌의 말이다. 남부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짐작컨대 1백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근자에 들어 독립언론에 대한 정권의 억압이 심해졌다. 한편 인권운동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현재 인권상황을 알리고 전달하고 서로 조직하게 된다. 이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공의 토론이 상식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정권들이, 다양한 원칙들을 수용할 정도로 열려 있는 세대인 신세대들에게 자리를 비켜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유스틴 부르케는 말한다.

부르케의 보고에 따르면, 라마잔 디릴다예브 인권운동가가 ‘열린 사회 연구소’와 한 인터뷰에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즉 독립언론이 없고 정치적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진공상태 때문이라 하겠다. 이 정보의 진공상태는 소련시절부터 내려온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관청과 고용주의 횡포에 내동댕이쳐진 상태에서 어떤 최소한의 권리를 이들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블라디스라프 오키스헤프 : “인권 지식이 모자라 민주주의 발전이 더뎈다.”

오키스헤프는 'Pavlodar Consultive Information Center'의 의장이다. 오키스헤프의 조직은 카자흐스탄에 인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들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지역 정부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스러워하며 이들을 활동을 지지하기도 한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미국이 선두에 선 “반테러전”을 핑계삼아 자체국가 내에 감시체제를 확장했다. 과격파퇴치라는 이름 아래 안전요원들의 힘이 늘어나고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박해가 심해졌다.

에브게니 초브티스(인권과 법리를 위한, 카자흐스탄 국제 사무국/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의 국장)는 “거의 모든 권력이 국가 대표에게 쏠려 있는 대통령 중심 연방국 다섯 나라 모두” 행정부의 권력이 강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뒤로 밀려난다는 점을 들었다. 초브티스는 또,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판은 잦아들었다. 특히 비판이 조용해진 것은 중앙아시아의 몇몇 나라가 반테러전선 형성을 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내놓은 시점 이후이다.”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국제적 압력을 주어 이들 나라 내의 민주화 세력을 강하게 할 것이라 희망했다. 그러나 해당 나라 정부의 억압적인 태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해졌다. 에너지 세계시장이 카스피해 지역의 엄청난 자원을 얻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계속 불투명하기만 하다.

알려지지 않은 인권상황 : 코카서스 지방과 중앙아시아의 병역거부자들

코카서스 지방과 중앙아시아의 전지역에선 군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불가능했다. 몇몇 지역에선 법이 조금 바뀌어지긴 했다. 그러나 그 국제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조오지아 공화국에선 현실적으로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선 사실상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뇌물을 듬뿍 주어야 한다. 설혹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대체복무는 군복무 기간과 비교하여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간이 길다. 또, 대체복무가 완전히 군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대체복무 경우, 단기 군사 훈련을 먼저 마쳐야 한다.

코카서스 공화국 나라들은 유럽협회의 회원국가로서 2001년에 제시된 추천조항 1518의 “병역거부규정”을 지켜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군대에 속해있는 모든 이들은 언제나 병역거부자로 자신을 등재시킬 수 있고, 이 권리의 조건과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들을 권리 또한 있다. 더욱이 병역거부규정은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되고 전적으로 민간성을 띠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가로서 지켜야 할 이 조항은 조오지아 국가의 경우 법적인 장치가 있기는 하나 결점이 많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곧 법개정이 있을 것이며,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경우는 관련법이 없다.

1. 코카서스의 병역거부 관련법과 상황

1-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에는 현재까지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유럽의회 회원국가인 지라, 늦어도 2003년까지는 해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두 개의 법 초안을 놓고 토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공적 차원에서 카라바흐 지역 분쟁이 법안 지연의 이유였다.

게다가 다루어졌던 법 초안을 보면 두 개의 초안 모두,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이 다분하다.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 군복무 기간보다 18개월이 긴 42개월로 상정되어 있는 데다 대체복무 후 정부, 경찰서, 법무 부서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마저도 특정 종교에 등재된 회원에게만 가능하며, 대체복무의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병영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일반 병역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박해는 지난 몇 년 간 계속 늘어났다. 대개의 경우가 몇 년 징역이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럽의회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따르면서 2001년 6월에 여호와 증인 37명을 방면하였다. 그러나 이어 또다시 체포가 있었다. 2001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병역기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75명, 이 중 32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현재 아르메니아 감옥과 노동수용소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최소한 25명이다.

1-2. 아제르바이잔

1995년에 제정된 아제르바이잔의 헌법은 종교적 이유에 기인한 대체복무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집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유럽의회 회원국가로서 아제르바이잔은 대체복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지, 과거의 (그나마 지킨 적 없었던) “대체 (군)복무” 규정이 “대체복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헌법이 현행법이 되었다. “대체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법은 연말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물론, 이 구체적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제대로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에는 병역거부로 인해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여호와 증인 2명에 대한 수사는 최근에 법 기준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의 감옥에 갇힌 “기피자”와 “탈영자”의 수는 2600명에 달한다. 기피 혹은 탈영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1-3. 그루지아

1991년 대체복무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적용,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1997년에 정해진 현행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처벌적 요소가 강하다. 군복무기간보다 12개월이 긴 36개월 근무기간

이며, 사실 해당 대체근무가 정말 민간 근무인가 하는 것도 불투명하다. 어쨌든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
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집행과정에는 중립적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00명 이상이 “대체복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한 것은 “너물”을 통해서이다.

과거 그루지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 아예 군 소집을 하지 않았다. 소집하여 공공연하게
병역거부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그루지아 공화국 감옥에는 병역기피자와 탈영자가 167명 있다. 이들 중 사실
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섞여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 아브샤진

아브샤진은 국제적으로는 그루지아 공화국의 일부로 알려져 있고 아직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아브샤진의 1994년 제정 헌법은 군복무의 대체복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체복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아브샤진에서는 최소한 30명의 여호와 증인이 병역거부로 인해 구금되었다.
이 중 한 명은 2001년 12월에도 감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앙아시아

2-1. 카자흐스탄

병역거부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일전에 있었
던 병역거부 대체가능성에 대한 토의도 민간차원의 근무 옵션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고 단지 약간 변
형된 수준의 옵션이었다. 즉, 군복무형태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것, 군 훈련과정을 다른 형태의 노동과
조합시킨다는 차원이었다.

수년을 거치면서 병역거부자, 특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가 장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그렇
지만 카자흐스탄의 병역의무법이 종교적 직책을 가진 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지니고 있어 종교단체와
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이후, 카자흐스탄의 여호와 증인은 모두 사제로 천명되었다. 그 후, 구금
된 병역거부자의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2.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에는 대체복무분야에서 이웃나라와 비교하여 비교적 오래된 전통이 있다. 1992년에 최초
의 관련법안이 있었다. 2001년 “대체복무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고,
2002년 2월에는 일반 군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현행법은 대체복무를 비국립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월급의 20퍼센트를 국방부
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현재 매우 폭넓게 번져 있다. 2001년 봄에 병역거부자가 70퍼센

트 정도가 되었고, 3천 5백 명 병역의무자 중 거의 반수가 대체복무를 하였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탈영이 늘어나 1만 2천 여 명 정도 되는 키르기스스탄 군대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 킴레코 신자 디미트리 주크호프가 병역 선서를 거부하자 정신병동으로 이 사람을 보내버린 것이다.

2-3. 타키스탄

타키스탄에는 전쟁복역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다가오는 해에 이를 만들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 혹은 윤리적 이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관한 정보가 없다. “기피”와 “도주/탈영”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타키스탄의 젊은이들은 “기피”와 “도주/탈영”으로 소집을 피해간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간다.

탈영병의 수는 매우 증가하여 2001년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을 수용하여 남은 군복무기간을 마치도록 기회를 다시 주기에 이른다.

2-4.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법에는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복무법안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다가오는 해 몇 해 사이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와 증인 및 이와 비슷한 종교단체 소속이 주를 이루는 병역거부자들은 형법에 따라 수 년 간의 징역을 산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수용소생활을 한다.

많은 경우 출소가 거부되곤 한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호와 증인 두 명(확실한 최소한의 숫자)이 전쟁에 봉사하길 거부하였다 하여 감옥에 있다.

2-5. 우즈베키스탄

1992년 “대체복무법”- 24개월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가정, 종교,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능하다.

현재 상태 - 뇌물수수 없이는 실행 불가. 뇌물가격이 높을 수록 온전한 병역면제 가능.

대체복무는 인기가 높다. 대체복무자 수는 일반 병영근무자 수의 3배가 된다.

대체복무가 완전히 민간차원인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에는 2개월 군사기초훈련이 들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보통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지불이 형편없는 노동에 동원된다. 여기서 받는 임금 중 20 퍼센트는 국방부에 납입한다.

현재 대체복무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아직 초안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실: 뇌물을 쓰지 않으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매년 갈수록 더 많은 수의 여호와 증인이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 있다.

당신의 평화를 사랑합니다

유호근 (병역거부자)

지난 10월 25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후 17일 만인 11월 11일 보석으로 출감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 실천에 대한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분명한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매우 급속한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로 인한 문제가 존재했었음에도 무관심했던 것에 비한다면 불과 1, 2 년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편으로 놀라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군대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것이다.

병역거부 이후 만난 사람들이 주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게 지지를 표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를 표명해주는 것이야 반갑기 그지없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반대하거나 심지어 이 주제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는 이들의 의식에 대해 나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 ‘남자는 군대를 꼭 가야한다’는 생각에 추호도 이견이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바랐었고 그 바램은 함께 유치장에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이들에게서 해소될 수 있었다.

한편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사회적 의제가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급속하게 전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북간의 대치상태의 해소, 기득권 층의 권력을 이용한 병역비리 척결부터 삶의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적 습성들, 예컨대 일상적 폭력의 만연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습성 등 우리들 주위에는 개인으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군사주의적 잔재가 많이 남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가시적으로 변하고 있는 여론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감격스러운 지지와 격려 때문일 것이다.

서글픈 만남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옮겨 지면서의 첫 만남은 교도관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병역거부자들이었다. 대부분 여초와의 증인인 그들은 구치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내가 병역범위반임을 확인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회중이세요?”라고 물었다. 난 아직도 그가

이야기한 ‘회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전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며 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에 감옥을 그려놓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나 역시 병역거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고통에 무지함을 넘어 무시의 눈빛을 보낸 적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정서가 한반도 역사의 긴 역사에 비해 국가동원체제의 짧은 경험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억압하는 데 피해자였던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짓을 해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다름의 일부분과 나의 다름의 일부분이 일치점을 발견하고서야 그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단지 특정 종교를 떠나 (상대적 가치로서가 아닌)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게 됨에 크게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미래의 나의 고통이기에 그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짧은 시간밖에 구속되어 있지 않아서 선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성실하고, 착하며,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단지 군대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사회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청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감옥 안의 대체복무?

‘총을 들 수 없는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체복무이다. 사회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불허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감옥 안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취사, 행정, 소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다. 구치소 측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을 인적자원으로 보고 기결수가 된 이후에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구치소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 한번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그곳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외에도 구치소 안의 상황이 사회의 군대문제에 비해 선택의 여지가 더 넓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 방의 물과 운영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방을 옮기는 것)이나 심지어 독방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징벌방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함으로서 구치소는 오히려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다.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획일적인 조치보다 유연한 운영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운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구금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와 다양성이 군대문제에도 시급히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대체복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누가 군대를 가려 하겠는가?’라는 질문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누구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모두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어도 현역보다 긴 기간, 사회봉사업무 특유의 헌신성에 대한 필요는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기피하고 현역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라고 한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국방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난 나라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국방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이 해소되며, 사회적 안전이 확보되는 등의 유의미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뢰제거, 구급요원활동, 장애인 봉사, 농촌작업활동 등을 바라는 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굳이 감옥 안에서 대체복무를 하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도입이 된다면 이는 병역거부 당사자는 물론 전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개인의 삶의 물리적 안전으로부터, 정신적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짧았지만 경험에 의하면 구치소 안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구치소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그 ‘다를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구치소의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의미로서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쟁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가면서 오히려 버림받은 소중한 개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더 담보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바로 대체복무로 이뤄낼 수 있다. 한반도에 군사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아니 이미 지나치게 많다. 남북에 현역군인만 200만 가까운 병력이 일상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영토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20-3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그 성과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라는 미국의 병력도 140만일 뿐이다. 군사비 지출의 감소는 사회복지로 투자될 수 있으며 현역 병력의 감소로 인한 인적 자원은 대체복무로서 봉사활동 등으로 국가에 이득이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의식과 매우 흡사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아직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병역거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과렴치한 행위로 생각하기 일쑤이다. 간담회를 다니다보면 나와서 간담회 이전에 자체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불과 1, 2시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의견은 찬성으

로 일부는 조건부 찬성으로 되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즉 그들만의 대화 속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형성해 놓은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전개하기란 힘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통하여 병역거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병역거부 5개월을 넘긴 지금 개인이 얻은 성과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에 다급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의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신념이 더 다듬어지고 그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때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한층 더 가까워 질 것이라 믿고 있다.

‘한반도에는 평화를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우리 사회의 평화인권의 향상을 기대하며 내일의 삶을 준비해본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황

최정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최근 또다시 병역거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작년 초 최초 병역거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사연과 가족들의 눈물이 그 첫 출발이었다면 작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이 그 2탄이었고 3탄은 현재 비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의 등장과 대학사회 내에서의 논란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것이 적합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진통이라면 누구든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그러한 조짐이 비치고 있지만, 그 논쟁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치거나 또 다시 지난 군가산점제 논쟁과 비슷하게 치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만 명에 가까운 병역거부 전과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1,400여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60년간의 억압에도, 수많은 고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들 병역거부자들을 그저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일제시대를 거쳐 근대화 이후 한국은 오랜 군사독재 기간과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권위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다양한 사업·운동·물결로 온 사회를 장악하였다. 이렇게 다양성이 사라진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인권문제가 드러났다. 수십 년 간 인권을 유린당해왔으나 최근야야 드러날 수 있었던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 빛에 가려진 그들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21세기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대통령의 나라,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의 인권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 특히 군대와 관련한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가장 그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직 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병역거부의 문제도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양 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그 권리가 인정되고 국가적으로 소수의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던데 반해 한국에서는 이

제 서야 뒤늦게 ‘군대 안가는 권리도 다 있구나...’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난 60여 년 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던 1만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단’의 굴레를 쓰고 심각하게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다.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횟수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 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92도1534, 1992년)

헌행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평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제44조제3호),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4조제3호).

이는 특정 신앙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등 복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입영기피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을 감안하여 그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65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21호, “군협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거부자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명예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최근까지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왔다.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

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입법·사법·행정의 전 영역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반 인권적 탄압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탄압의 근거는 병역거부에 관한 사회적 이해와 흐름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몰이해로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라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특정 종교인들의 해괴한 행동(?)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우리 사회는 쉽게 이들의 양심은 양심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속단해버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했을 때 함께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구타에 의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알고도 감옥행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의 양심이 현재가 말하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즉 양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의 신념은 헌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고귀한 마음의 소리인 것이다.

... 이 문제를 거론한 KBS와 MBC의 시사프로그램과 [한겨레21]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개입되어 있음과 그들을 위한 특혜입법임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으로서 '집중 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집중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식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 보장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이 끼치는 폐해는 간과하고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 2001년)

...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2001년)

최근 인권상황

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러한 병역거부 행위가 특정 종교집단의 독특한 행동이 아닌 모든 인간의 양심과 인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공론화 시킴과 동시에 산재해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었다. 특히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가족과 시민단체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나 얼마 전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행위 금지에 관한 권고 이외에 별다른 변화된 상황이 없는 실정이다.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내용은

- 항명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상 차별 행위의 시정 및 종교 자유의 보장 (아울러 사면조치가 시행될 시 병역거부자들의 전과를 말소)

-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학을 불허한 대구교육대학교 사건

이 중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행위 금지에 관한 권고 이외에 다른 진정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아직 전해진 바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각 부처를 통해 갖은 탄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현재 이들의 인권상황을 해결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그들의 가족 및 시민단체의 애가 타는 것이다.

수십 년 간의 인권유린에도 그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지 못해 오로지 국가기관에 의해 아무런 저항 없이 차별의 칼날이 휘둘러졌었다는 점, 이들의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교도소가 이들 없이 굴러갈 수 없을 정도로 행형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고 맡길 수 있을 정도라는 점, 전통적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하에서 공정한 법 적용보다도 많은 예외 하에서 억압받아왔었다는 점, 오랜 기간 변함 없는 양심상의 결정과 행동으로 구속 전·후의 일 처리에서 암묵적 패턴이 존재해 왔으나 최근 병역거부 운동의 확산으로 더욱 탄압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 하에서 일반 범죄자들과는 차별적으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이 3년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무리 없이 각급 대학에 복학할 수 있었고 항명죄 처벌 기간이 최소 27개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대구교육대학교의 입장은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복학의 기회를 막겠다는 처사와 다름없다.

변화된 상황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법계의 움직임이다.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화된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수 있었고 형제나 아버지가 같은 고초를 겪었던 거부자들의 경우 6개월의 형이 감형되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민간법정에서는 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다시 병역통지를 받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인 1년 6개월의 맞춤형량이

선고되는 관행이 정착되었으며 지난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이경수씨가 제출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다. 이는 병역거부 당사자들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 당국에 의해 위헌여부를 물은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 하겠다. 결정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인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은 이와 같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 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처벌규정은 위 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 해 몇몇 지방병무청에서 공문을 통해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완력을 사용해 서라도 모두 훈련소에 입소시킬 것을 중용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또한 특히 지난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병역의무의 기피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구속수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 초 종종 불구속 수사 결정이 내려지던 분위기와 비교해서 대조되는 것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교정의 날에는 가석방 예정자들에게 가석방 여부를 통보해놓고 이후 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5일 가석방에서 형기의 70%를 복역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하였다. 이어 교정의 날에도 역시 통상적인 병역거부자 가석방 대상보다 넓은 범위인 70% 형기를 채운 거부자들을 가석방 할 것을 결정하고 개별통보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1947년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가 영국의 퀘이커 봉사협회와 함께 1,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 선택적 군복무의 확장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수만 명의 양심수를 석방시킨 공로로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같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수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망스런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어야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 등 사회적으로 또 법 해석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위와 같은 조처들은 지금 당장 시정되고 해결되어야 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감옥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이들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인 여론이나 국방부의 반대를 핑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말고 정부나 나서서 설득하고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되었을 시 생기는 사회적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꾸준히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인 1년 6개월의 맞춤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입법과 행정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